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p>〈신 설〉</p>	<p>부 칙</p> <p>이 규칙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이기〉</p> <p>[별표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별지 제3호서식]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서</p> <p>[별지 제3호의2서식]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서(해상풍력 예상가중치)</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이기〉</p> <p>[별표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p> <p>[별표1-3] 내부망 적용거리 산정기준</p> <p>[별지 제3호서식]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서</p> <p>[별지 제3호의2서식]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서(해상풍력 예상가중치)</p> <p>[별지 제3호의4서식] 해상풍력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국내부품 사용비율 확인서</p>	<p>• 지침 별표2 비고 제8호 4항 단서에 따른 세부기준 신설</p>

<별 지>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p>[별표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기준(제13조 관련)</p> <p>(이하 생략)</p> <p>㉠ ~ ㉢ (이하 생략)</p> <p>㉣ 풍력 설비</p> <p>(이하 생략)</p> <p>해상풍력 가중치 산정시 고려하는 “연계거리”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인공해안선을 포함하되, 한전계통과 연계되는 육지 또는 육지로부터 계통이 연결되는 섬의 해안선을 의미)과 그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를 의미한다. 다만,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풍력발전단지의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통해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간의 직선거리”를 연계거리 산정시 추가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별표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기준(제13조 관련)</p> <p>(현행과 같음)</p> <p>㉠ ~ ㉢ (현행과 같음)</p> <p>㉣ 풍력 설비</p> <p>(현행과 같음)</p> <p>해상풍력 가중치 산정시 고려하는 “연계거리”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인공해안선을 포함하되, 한전계통과 연계되는 육지 또는 육지로부터 계통이 연결되는 섬의 해안선을 의미)과 그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이하 “외부망”이라 한다)를 의미한다. <단서 삭제></p> <p>지침 별표 2 비고 제8호제4항 단서에 따른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 간의 직선거리”를 연계거리 산정시 추가하는 별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① “내부망 직선거리”란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 간(間)의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다만, 풍력발전기의 용량이 다른 경우에는 용량을 고려한 가중평균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p> <p>② “내부망 적용거리”란 연계거리 산정시 추가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p> <p>③ 내부망 적용거리는 국내 부품의 사용비율, 국가 기술개발 성과물의 활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기본가중치 이외에 외부망과 수심에 따라 추가되는 복합가중치가 있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내부망 적용거리로 인해 추가되는 가중치가 외부망과 수심에 따라 추가되는 복합가중치를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수심이 낮고 외부망 거리가 짧아 기본가중치만 받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100MW 이하의 사업은 [별표 1-3]의 기준을 통해 산정된 내부망 적용거리를 적용하고, 100MW를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별표 1-3]의 기준을 통해 산정된 내부망</p>	<p>지침 별표2 비고 제8호 4항 단서에 따른 불필요문구 삭제</p> <p>지침 별표2 비고 제8호 4항 단서에 따른 세부기준 신설</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이하 생략)</p> <p>지침 별표 2 비고 제8호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사항은 아래와 같다.</p> <p>① ~ ④ (이하 생략)</p> <p>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안내받은 예상가중치는 유효하지 않다.</p> <p>1. 예상가중치 검토 결과를 안내받은 이후 해당 설비의 용량, 설치위치 <u>〈신설〉</u> 등이 변경된 경우</p> <p>2. 동일 설비에 대해 예상가중치의 검토를 재요청하고 그 결과를 안내받은 경우</p> <p>⑥ (이하 생략)</p> <p>④ ~ ⑬ (이하 생략)</p>	<p><u>적용거리에 '100MW ÷ 전체발전단지용량(MW)'을 곱하여 적용한다.</u></p> <p>④ [별표 1-3] 제1호에 따른 국내 부품 사용비율 총합이 50% 이상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내부망 직선거리의 50%까지 내부망 적용거리로 인정하며, 이 중 국가 기술개발 성과물(부품, 시스템, 장비 등)을 활용한 발전사업은 [별표 1-3] 제2호에 따른 내부망 적용거리를 가산한다.</p> <p>(현행과 같음)</p> <p>지침 별표 2 비고 제8호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사항은 아래와 같다.</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안내받은 예상가중치는 유효하지 않다.</p> <p>1. 예상가중치 검토 결과를 안내받은 이후 해당 설비의 용량, 설치위치, <u>국내부품 사용비율, 국가 기술개발 성과물의 활용여부</u> 등이 변경된 경우</p> <p>2. 동일 설비에 대해 예상가중치의 검토를 재요청하고 그 결과를 안내받은 경우</p> <p>⑥ (이하 생략)</p> <p>④ ~ ⑬ (현행과 같음)</p>	<p>내부망 적용거리 산정기준 신설에 따른 조건 수정</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별표 1-3] 내부망 적용거리 산정기준</p> <p>1. 국내 부품 사용비율에 따른 내부망 적용거리</p> <p>가. 국내 부품 사용비율이 50% 이상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내부망 직선거리의 50%를 내부망 적용거리로 인정하고, 국내부품 사용비율이 50% 미만인 발전사업의 경우 내부망 적용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p> <p>나. 국내 부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증을 득한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구성품 단위(터빈의 경우 세부 부품 단위)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품 단위가 해외공장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사업자가 국내 원자재 등을 활용해 구성품을 만든 것을 증명시 해당 비율만큼 국내 부품으로 인정한다. 또한, 부품 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은 시공 등의 비용을 제외한 순수 기자재비로 한다.</p> <p>다. 국내 부품 사용비율은 아래와 같이 터빈 등 5대 구성품의 국내 부품 사용비율의 합으로 결정하며, 터빈의 경우 13개 세부 부품을 고려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050 727 1908 1240"> <thead> <tr> <th data-bbox="1055 729 1171 778">구분</th> <th data-bbox="1171 729 1904 778">산정식</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055 778 1171 863" rowspan="5">5대 구성품의 국내부품 사용비율 산정식¹⁾</td> <td data-bbox="1171 778 1904 863"> $\sum_{13\text{개 세부부품}} \left\{ \frac{\text{국내부품(수량 or 비용)}}{\text{국내부품(수량 or 비용)} + \text{해외부품(수량 or 비용)}} \times \text{기준비율}(\%) \right\}$ </td> </tr> <tr> <td data-bbox="1171 863 1904 932"> $\frac{\text{국내부품(수량 or 비용)}}{\text{국내부품(수량 or 비용)} + \text{해외부품(수량 or 비용)}} \times \text{기준비율}(\%)$ </td> </tr> <tr> <td data-bbox="1171 932 1904 1000"> $\frac{\text{국내부품(수량 or 비용)}}{\text{국내부품(수량 or 비용)} + \text{해외부품(수량 or 비용)}} \times \text{기준비율}(\%)$ </td> </tr> <tr> <td data-bbox="1171 1000 1904 1069"> $\frac{\text{국내부품(수량 or 비용)}}{\text{국내부품(수량 or 비용)} + \text{해외부품(수량 or 비용)}} \times \text{기준비율}(\%)$ </td> </tr> <tr> <td data-bbox="1171 1069 1904 1137"> $\frac{\text{국내부품(수량 or 비용)}}{\text{국내부품(수량 or 비용)} + \text{해외부품(수량 or 비용)}} \times \text{기준비율}(\%)$ </td> </tr> <tr> <td data-bbox="1055 1137 1171 1240">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국내부품 사용비율</td> <td data-bbox="1171 1137 1904 1240">터빈 등 5대 구성품의 국내부품 사용비율의 합</td> </tr> </tbody> </table> <p>1) 국내 부품 사용비율은 수량을 원칙으로 산정하되, 국내 원자재 등을 활용하여 해외공장에서 구성품이 생산된 경우에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각 구성품의 국내부품 사용비율 산정식에는 수량과 비용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 없다.</p>	구분	산정식	5대 구성품의 국내부품 사용비율 산정식 ¹⁾	$\sum_{13\text{개 세부부품}} \left\{ \frac{\text{국내부품(수량 or 비용)}}{\text{국내부품(수량 or 비용)} + \text{해외부품(수량 or 비용)}} \times \text{기준비율}(\%) \right\}$	$\frac{\text{국내부품(수량 or 비용)}}{\text{국내부품(수량 or 비용)} + \text{해외부품(수량 or 비용)}} \times \text{기준비율}(\%)$	$\frac{\text{국내부품(수량 or 비용)}}{\text{국내부품(수량 or 비용)} + \text{해외부품(수량 or 비용)}} \times \text{기준비율}(\%)$	$\frac{\text{국내부품(수량 or 비용)}}{\text{국내부품(수량 or 비용)} + \text{해외부품(수량 or 비용)}} \times \text{기준비율}(\%)$	$\frac{\text{국내부품(수량 or 비용)}}{\text{국내부품(수량 or 비용)} + \text{해외부품(수량 or 비용)}} \times \text{기준비율}(\%)$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국내부품 사용비율	터빈 등 5대 구성품의 국내부품 사용비율의 합	<p>지침 별표2 비고 제8호 4항 단서에 따른 세부기준 신설</p>
구분	산정식											
5대 구성품의 국내부품 사용비율 산정식 ¹⁾	$\sum_{13\text{개 세부부품}} \left\{ \frac{\text{국내부품(수량 or 비용)}}{\text{국내부품(수량 or 비용)} + \text{해외부품(수량 or 비용)}} \times \text{기준비율}(\%) \right\}$											
	$\frac{\text{국내부품(수량 or 비용)}}{\text{국내부품(수량 or 비용)} + \text{해외부품(수량 or 비용)}} \times \text{기준비율}(\%)$											
	$\frac{\text{국내부품(수량 or 비용)}}{\text{국내부품(수량 or 비용)} + \text{해외부품(수량 or 비용)}} \times \text{기준비율}(\%)$											
	$\frac{\text{국내부품(수량 or 비용)}}{\text{국내부품(수량 or 비용)} + \text{해외부품(수량 or 비용)}} \times \text{기준비율}(\%)$											
	$\frac{\text{국내부품(수량 or 비용)}}{\text{국내부품(수량 or 비용)} + \text{해외부품(수량 or 비용)}} \times \text{기준비율}(\%)$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국내부품 사용비율	터빈 등 5대 구성품의 국내부품 사용비율의 합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표1 : 구성품별 기준비율〉</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data-bbox="1084 360 1644 395">부품명</th> <th data-bbox="1644 360 1877 395">기준 비율(%)</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084 395 1644 430">터빈</td> <td data-bbox="1644 395 1877 430">36.4</td> </tr> <tr> <td data-bbox="1200 430 1644 466">나셀&허브 조립 (Nacelle&Hub Assembly)</td> <td data-bbox="1644 430 1877 466">12.2</td> </tr> <tr> <td data-bbox="1200 466 1644 501">나셀 하우징 (Nacelle housing)</td> <td data-bbox="1644 466 1877 501">1.8</td> </tr> <tr> <td data-bbox="1200 501 1644 536">기어박스(Gear box)¹⁾</td> <td data-bbox="1644 501 1877 536">8.2</td> </tr> <tr> <td data-bbox="1200 536 1644 571">발전기 (Generator)¹⁾</td> <td data-bbox="1644 536 1877 571">2.4</td> </tr> <tr> <td data-bbox="1200 571 1644 606">커플링(Coupling)¹⁾</td> <td data-bbox="1644 571 1877 606">0.6</td> </tr> <tr> <td data-bbox="1200 606 1644 641">전력변환장치(Power Converter)</td> <td data-bbox="1644 606 1877 641">3.2</td> </tr> <tr> <td data-bbox="1200 641 1644 676">변압기 (Transformer)</td> <td data-bbox="1644 641 1877 676">2.2</td> </tr> <tr> <td data-bbox="1200 676 1644 711">주축 (Drive shaft)</td> <td data-bbox="1644 676 1877 711">1.4</td> </tr> <tr> <td data-bbox="1200 711 1644 746">요 드라이브(Yaw drive)</td> <td data-bbox="1644 711 1877 746">0.7</td> </tr> <tr> <td data-bbox="1200 746 1644 782">요 베어링(Yaw bearing)</td> <td data-bbox="1644 746 1877 782">1.3</td> </tr> <tr> <td data-bbox="1200 782 1644 817">피치 드라이브(Pitch drive)</td> <td data-bbox="1644 782 1877 817">0.6</td> </tr> <tr> <td data-bbox="1200 817 1644 852">피치 베어링(Pitch bearing)</td> <td data-bbox="1644 817 1877 852">1.2</td> </tr> <tr> <td data-bbox="1200 852 1644 887">브레이크(Brake)</td> <td data-bbox="1644 852 1877 887">0.6</td> </tr> <tr> <td data-bbox="1084 887 1644 922">블레이드 (Blade)</td> <td data-bbox="1644 887 1877 922">14.3</td> </tr> <tr> <td data-bbox="1084 922 1644 957">타워</td> <td data-bbox="1644 922 1877 957">12.7</td> </tr> <tr> <td data-bbox="1084 957 1644 992">하부구조물</td> <td data-bbox="1644 957 1877 992">30.0</td> </tr> <tr> <td data-bbox="1084 992 1644 1027">내부망 케이블</td> <td data-bbox="1644 992 1877 1027">6.6</td> </tr> <tr> <td data-bbox="1084 1027 1644 1062" style="text-align: center;">합 계</td> <td data-bbox="1644 1027 1877 1062">100</td> </tr> </tbody> </table> <p>1) 해상풍력발전기가 직접구동형(Direct Drive Type, 기어박스가 없는 형식)인 경우 기어박스, 발전기, 커플링의 기준비율의 총합(11.2%)을 발전기의 기준비율로 정의한다.</p> <p>2. 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활용에 따른 내부망 적용거리</p> <p>가. 제1호에 따른 국내 부품 사용비율이 50% 이상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면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국가 기술개발 최종 성과물(부품, 시스템, 장비 등)을 활용한 발전사업에 한한다.</p> <p>㉠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발주한 기술개발 과제 중 품목분류상 부품, 시스템, 장비로 구분되는 과제(운영 및 유지관리 과제는 제외)의 최종 성과물</p>	부품명	기준 비율(%)	터빈	36.4	나셀&허브 조립 (Nacelle&Hub Assembly)	12.2	나셀 하우징 (Nacelle housing)	1.8	기어박스(Gear box) ¹⁾	8.2	발전기 (Generator) ¹⁾	2.4	커플링(Coupling) ¹⁾	0.6	전력변환장치(Power Converter)	3.2	변압기 (Transformer)	2.2	주축 (Drive shaft)	1.4	요 드라이브(Yaw drive)	0.7	요 베어링(Yaw bearing)	1.3	피치 드라이브(Pitch drive)	0.6	피치 베어링(Pitch bearing)	1.2	브레이크(Brake)	0.6	블레이드 (Blade)	14.3	타워	12.7	하부구조물	30.0	내부망 케이블	6.6	합 계	100	
부품명	기준 비율(%)																																									
터빈	36.4																																									
나셀&허브 조립 (Nacelle&Hub Assembly)	12.2																																									
나셀 하우징 (Nacelle housing)	1.8																																									
기어박스(Gear box) ¹⁾	8.2																																									
발전기 (Generator) ¹⁾	2.4																																									
커플링(Coupling) ¹⁾	0.6																																									
전력변환장치(Power Converter)	3.2																																									
변압기 (Transformer)	2.2																																									
주축 (Drive shaft)	1.4																																									
요 드라이브(Yaw drive)	0.7																																									
요 베어링(Yaw bearing)	1.3																																									
피치 드라이브(Pitch drive)	0.6																																									
피치 베어링(Pitch bearing)	1.2																																									
브레이크(Brake)	0.6																																									
블레이드 (Blade)	14.3																																									
타워	12.7																																									
하부구조물	30.0																																									
내부망 케이블	6.6																																									
합 계	100																																									

현행	개정	개정사유										
	<p>㉠ 지침 별표2 비고 제8호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예상가중치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완료과제(국가 기술개발 과제 최종 보고서 상 총수행기간 기준 과제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국가 기술개발 과제 중 종료시점이 2년 이내인 과제”의 최종 성과물</p> <p>㉡ 설치확인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완료된 기술개발 과제의 최종 성과물</p> <p>나. 단일 발전단지에서 다수의 국가 기술개발 성과를 활용할 경우 국비(정부출연금) 투입이 가장 큰 국가 기술개발 성과물로 산정한다.</p> <p>다. 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활용에 따른 내부망 적용거리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066 539 1895 778"> <thead> <tr> <th colspan="2">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적용거리(km) 산정식</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출연금 100억원 이상</td> <td>$\frac{\text{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인정량}(MW)}{\text{발전단지 총용량}(MW)} \times \text{내부망 직선거리}(km) \times 50\%$</td> </tr> <tr> <td>정부출연금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td> <td>$\frac{\text{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인정량}(MW)}{\text{발전단지 총용량}(MW)} \times \text{내부망 직선거리}(km) \times 20\%$</td> </tr> <tr> <td>정부출연금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td> <td>$\frac{\text{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인정량}(MW)}{\text{발전단지 총용량}(MW)} \times \text{내부망 직선거리}(km) \times 10\%$</td> </tr> </tbody> </table> <p>라. 발전단지당 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인정량은 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사용량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용량(MW)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되, 100MW를 초과할 수 없다.</p> <table border="1" data-bbox="1048 874 1912 986"> <thead> <tr> <th>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인정량(MW) 산정식</th> </tr> </thead> <tbody> <tr> <td>$\frac{\text{해당부품, 시스템, 장비 등의 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사용량}(개 \text{ or } km)}{\text{해당부품, 시스템, 장비 등의 총량}(개 \text{ or } km)} \times \text{발전단지 총용량}(MW)$</td> </tr> </tbody> </table> <p>마. 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활용에 따른 내부망 적용거리 인정은 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당 누적 인정량 기준으로 총 250MW에 한하며, 예상가중치 통보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p>	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적용거리(km) 산정식		정부출연금 100억원 이상	$\frac{\text{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인정량}(MW)}{\text{발전단지 총용량}(MW)} \times \text{내부망 직선거리}(km) \times 50\%$	정부출연금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frac{\text{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인정량}(MW)}{\text{발전단지 총용량}(MW)} \times \text{내부망 직선거리}(km) \times 20\%$	정부출연금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frac{\text{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인정량}(MW)}{\text{발전단지 총용량}(MW)} \times \text{내부망 직선거리}(km) \times 10\%$	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인정량(MW) 산정식	$\frac{\text{해당부품, 시스템, 장비 등의 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사용량}(개 \text{ or } km)}{\text{해당부품, 시스템, 장비 등의 총량}(개 \text{ or } km)} \times \text{발전단지 총용량}(MW)$	
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적용거리(km) 산정식												
정부출연금 100억원 이상	$\frac{\text{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인정량}(MW)}{\text{발전단지 총용량}(MW)} \times \text{내부망 직선거리}(km) \times 50\%$											
정부출연금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frac{\text{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인정량}(MW)}{\text{발전단지 총용량}(MW)} \times \text{내부망 직선거리}(km) \times 20\%$											
정부출연금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frac{\text{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인정량}(MW)}{\text{발전단지 총용량}(MW)} \times \text{내부망 직선거리}(km) \times 10\%$											
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인정량(MW) 산정식												
$\frac{\text{해당부품, 시스템, 장비 등의 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사용량}(개 \text{ or } km)}{\text{해당부품, 시스템, 장비 등의 총량}(개 \text{ or } km)} \times \text{발전단지 총용량}(MW)$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별지 제3호의2서식]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서(해상풍력 예상가중치)				[별지 제3호의2서식]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서(해상풍력 예상가중치)				내부망 적용거리 산정기준 신설에 따른 양식 및 제출서류 수정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서 (해상풍력 예상가중치)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서 (해상풍력 예상가중치)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전화번호)		대표자명		연락처(전화번호)			
발전소 현황	주소			주소						
	발전소명			발전소명						
	소재지			소재지						
	허가용량(kW)			허가용량(kW)						
	연계거리(km)		수심(m)		총연계거리(km)	km (외부망 : km, 내부망 직선거리 : km)				
	발전사업허가번호 (자가용설비 제외)		상업운전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수심(m)	국내부품 사용비율(%)				
	계통구분	<input type="checkbox"/> 1인입 <input type="checkbox"/> 별도인입 <input type="checkbox"/> 기타		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input type="checkbox"/> 활용 <input type="checkbox"/> 미활용					
	담당자명		부서/직책		발전사업허가번호 (자가용설비 제외)	상업운전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연락처		이메일		계통구분	<input type="checkbox"/> 1인입 <input type="checkbox"/> 별도인입 <input type="checkbox"/> 기타					
재원	총투자비	백만원	자체조달 등 (일반용자,PF포함)	백만원	총투자비	백만원	자체조달 등 (일반용자,PF포함)	백만원		
			공급의무자조달 (SPC만 해당)	백만원			공급의무자조달 (SPC만 해당)	백만원		
			무상지원금	국가			백만원	무상지원금	국가	백만원
				지자체			백만원		지자체	백만원
위와 같이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해상풍력 예상가중치)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해상풍력 예상가중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1부. 2.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역이용협의 결과 통보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 첨부서류 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1부. 2.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역이용협의 결과 통보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출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현행	개정	개정사유																																																																																																																																																																									
<신 설>	<p>[별지 제3호의4서식] 해상풍력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국내 부품 사용비율 확인서 (별표 1-3관련)</p> <p style="text-align: center;">해상풍력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국내 부품 사용비율 확인서 (<input type="checkbox"/> 해상풍력 예상가중치 신청용 <input type="checkbox"/> 설비확인 신청용)</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 style="width:10%; text-align: center;">신청인</td> <td style="width:30%;">상호(법인명)</td> <td style="width:30%;"></td> <td style="width:30%;">사업자등록번호</td> </tr> <tr> <td>대표자명</td> <td></td> <td>연락처(전화번호)</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발전소</td> <td>주소</td> <td></td> <td></td> </tr> <tr> <td>발전소명</td> <td></td> <td>허가용량(kW)</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발전소 현황</td> <td>소재지</td> <td></td> <td></td> </tr> <tr> <td>담당자명</td> <td></td> <td>부서/직책</td> </tr> <tr> <td></td> <td>연락처</td> <td></td> <td>이메일</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15%;">부품명</th> <th rowspan="2" style="width:10%;">제조사</th> <th colspan="2" style="width:20%;">국내부품</th> <th colspan="2" style="width:20%;">해외부품</th> <th rowspan="2" style="width:10%;">국내부품 사용비율 (%)</th> </tr> <tr> <th>순수 기자재비(원)</th> <th>사용수량 (개·km)</th> <th>순수 기자재비(원)</th> <th>사용수량 (개·km)</th> </tr> </thead> <tbody> <tr><td>터빈</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나셀&허브 조립</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나셀 하우징</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기어박스</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발전기</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커플링</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전력변환장치</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변압기</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주축</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요 드라이브</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요 베어링</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피치 드라이브</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피치 베어링</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브레이크</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블레이드</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타워</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하부구조물</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내부망 케이블</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합 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5px;">* 국내부품 사용비율은 별표 1-3 제1호의 5대 구성품의 국내부품 사용비율 산정식을 활용하고 국내 원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비율을 반영하여 기재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 계획서 또는 실적증빙 별도첨부)</p>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5px;">위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 지침 별표2에 따른 설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또한, 사실과 다를 경우 가중치 조정 및 REC 회수 등의 제한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신청인(대표자) (인)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p>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전화번호)	발전소	주소			발전소명		허가용량(kW)	발전소 현황	소재지			담당자명		부서/직책		연락처		이메일	부품명	제조사	국내부품		해외부품		국내부품 사용비율 (%)	순수 기자재비(원)	사용수량 (개·km)	순수 기자재비(원)	사용수량 (개·km)	터빈							나셀&허브 조립							나셀 하우징							기어박스							발전기							커플링							전력변환장치							변압기							주축							요 드라이브							요 베어링							피치 드라이브							피치 베어링							브레이크							블레이드							타워							하부구조물							내부망 케이블							합 계							<p>내부망 적용거리 산정기준 신설에 따른 제출 양식 신설</p>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전화번호)																																																																																																																																																																								
발전소	주소																																																																																																																																																																										
	발전소명		허가용량(kW)																																																																																																																																																																								
발전소 현황	소재지																																																																																																																																																																										
	담당자명		부서/직책																																																																																																																																																																								
	연락처		이메일																																																																																																																																																																								
부품명	제조사	국내부품		해외부품		국내부품 사용비율 (%)																																																																																																																																																																					
		순수 기자재비(원)	사용수량 (개·km)	순수 기자재비(원)	사용수량 (개·km)																																																																																																																																																																						
터빈																																																																																																																																																																											
나셀&허브 조립																																																																																																																																																																											
나셀 하우징																																																																																																																																																																											
기어박스																																																																																																																																																																											
발전기																																																																																																																																																																											
커플링																																																																																																																																																																											
전력변환장치																																																																																																																																																																											
변압기																																																																																																																																																																											
주축																																																																																																																																																																											
요 드라이브																																																																																																																																																																											
요 베어링																																																																																																																																																																											
피치 드라이브																																																																																																																																																																											
피치 베어링																																																																																																																																																																											
브레이크																																																																																																																																																																											
블레이드																																																																																																																																																																											
타워																																																																																																																																																																											
하부구조물																																																																																																																																																																											
내부망 케이블																																																																																																																																																																											
합 계																																																																																																																																																																											